

의안번호	제12호
의결연월일	2021. 02. 17.

논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2월 09일 서원 의원 외 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02월 09일
- 다. 상정일자 : 2021년 0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서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,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1개 차로이상 점용하여 시행하는 도로신설, 상·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등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.(안 제3조)
-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함.(안 제4조)
- 시장은 시행자로 하여금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및 변경, 이행 여부 확인 등을 하여야 함.(안 제5조, 제6조,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